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3. 25 선고 2020가단201513 판결 [지급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길기봉, 김한솔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문병규, 윤도연

변 론 종 결 2022. 2. 11.

판 결 선 고 2022. 3.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13.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2018. 9. 1.부터 2020. 2. 28.까지 18개월 동안 케포톤 외 17개 품목을 판매하고, 2억 원을 특매대여금으로 대여하되, C이 특매계약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위 특매대여금 등을 즉시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등의 내용의 특매계약(이하 '이 사건 특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13. C과 사이에 이 사건 특매계약에 따른 특매대여금 대여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C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13. 원고에게 이 사건 특매계약에 관하여 채무자는 C, 보증금액은 2억 원, 보증기간은 2018. 9. 13.부터 2019. 3. 13.까지, 피보증채무의 내용은 근보증으로서 보증기간 중에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로 하는 등의 내용의 전자지급보증서(이하 '제1지급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9. 3. 12. 다시 원고에게 제1지급보증서에 따른 구 보증채무의 특약을 승계하되, 보증기간은 2019. 3. 12.부터 2019. 9. 11.까지로 하고, 원고는 C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만료일 전에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되, 보증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는 경우 보증채무는 소멸한다는 등의 내용의 전자지급보증서(이하 '제2지급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마. 그 후 C이 2019. 4.경 부도로 인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약정금 2억 원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5호증(갑 제9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문서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2, 4, 5호증의 각 인영부분이 인정되므로,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각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제출된 증거들 내지 주장된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D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마땅한바(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대여약정채무가 실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특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 사건 대여약정서(갑 제4호증), 이 사건 대여약정 관련 C 작성의 영수증(갑 제5호증) 및 제1, 2지급보증서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가 C에게 대여한 이 사건 대여약정금에 대한 지급보증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다.

나.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C이 제1, 2지급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당시 원인계약서로서 거래약정서(을 제1호증)만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C과 원고 사이의 물품대금채무만을 보증한다는 의사로 제1, 2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제1, 2지급보증서상의 피보증채무의 내용은 근보증으로서 보증기간 중에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이므로, 이 사건 대여약정채무도 피보증채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여약정채무의 발생일은 2018. 9. 13.로서 제2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 이전이고, 이 사건 대여약정채무의 이행기는 C이 부도로 인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된 2019. 4.경으로서 제1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 이후이므로, 결국 이 사건 대여약정채무는 제1, 2지급보증서 중 어느 지급보증서의 피보증채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제2지급보증서에서 특약사항으로 제1지급보증서에 따른 구 보증채무의 특약을 승계한다고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지급보증서는 제1지급보증서를 승계하여 보증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대여약정채무는 제1, 2지급보증서의 피보증채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훈재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 청구원인을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